

# 젠더법학연구소 규정

2008. 12. 8 제정

2010. 7. 7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둔다. (개정 2010.7.7)

제 3 조 (사업) 연구소는 젠더법학 및 이와 관련된 학술의 연구 활동을 통해 젠더법학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실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젠더법학 연구 및 조사
2. 젠더법학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
3.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
4. 국내외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
5. 교과과정 개발 및 교재개발
6. Clinic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운영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 4 조 (소장·부소장)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0.7.7)

③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10.7.7)

제 5 조 (조직) ①연구소에 연구개발부, 교육협력부, 저널출판부, Clinic 프로그램 개발부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연구개발부는 젠더법학의 법이론과 법정책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교육협력부는 젠더법학에 관한 교육, 학술행사 개최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저널출판부는 문헌의 수집 및 분석과 간행물 발간, 홈페이지 관리 등 디지털 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⑤Clinic 프로그램 개발부는 효과적인 로스쿨 교육을 위한 젠더법학 Clinic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⑥행정실은 서무,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⑦젠더법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,

센터 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 6 조 (부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. 부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0.7.7)

②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7 조 (연구위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0.7.7)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해당 분야에 정통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0.7.7)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8 조 (연구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9 조 (행정인력) 연구소에 행정인력을 둘 수 있으며, 행정인력은 소장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0.7.7)

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젠더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,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된다. (개정 2010.7.7)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면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

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 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학전문대학원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7.7)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 12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연구소의 경비는 교비, 연구비, 보조금, 연구소 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.

제 13 조 (운영세칙)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8. 12. 8 제정)

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